3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유형

<3월 재난안전사고 유형>

해빙기 화재 산불 지역축재 화사, 미새먼지

- □ (해빙기 안전사고)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려지반이 약해지면서 건설 공사장, 노후주택, 축대·옹벽, 잘린 땅(절개지) 등에서의 낙석과 붕괴사고에 주의한다.
 - 생활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 특히, 잘린 땅(절개지)이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흙모래 등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본다.
- □ (화 재) 3월은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달로, 전열기 등의 난방기구 사용 이 많은 겨울철 보다 오히려 화재 발생이 많다.
 - 특히,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등으로로 인한 화재가 많음
- □ (산 불)건조한 날씨와 계절풍의 영향 등으로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 ※ 봄철의 낙엽 속 수분 함량: 14~16%(국립산림과학원)
 - 산불 발생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지역축제 안전사고) 전국적으로 각종 봄맞이 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축제 중 한꺼번에 많은 관람객이 몰리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 □ (황사, 미세먼지) 3월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의 유입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 황사가 발생하거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면 창문 등을 닫아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한다.
 - 또한, 황사 외에도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다.

전통 킥보드! 아 안전하게 아 시 이용하게요 아스



정원초과 이용금지

승차정원 초과 범칙금 4만원



보행자 배려하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고 신호를 준수해주세요



안전모 착용

안전모 외 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주세요 <mark>운전자 범칙금 2만원</mark>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범칙금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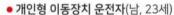
무면허 운전금지

범칙금 10만원



육주운전 금지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지 마세요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2021. 9. 29. 01:45경 영남대에서 진량 방면 운행중 압량농협네거리에서 신호 위반하여 직진,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 좌측면과 개인형 이동장치 앞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개인형 이동장치 <mark>운전자 사망</mark>)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보도 주행 불가,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중 보행자 인적 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 보험가입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 ↓ 징역·2천만원↓ 벌금)





경산경찰서

(참고 2) 황사와 미세먼지 비교



구분	황 사	미세먼지
	- 중국, 몽골의 사막지대 등에서 불어오는 흙먼지	-직경이 10μ m이하인 먼지로서 10μ m이하인 $PM_{2.5}$ 로 구분
정 의	-입자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경우 통상 1~10µm 수준	
성 분	-주로 토양성분	-일부 광물성분도 있으나 주로 탄소 또는 이온 성분
영 향	-부정적 영향: 농작물 등의 생육 방해, 반도체 공장 등 조업 방해 등 -긍정적 영향: 토양의 산성화 예방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각종 폐 질환 등 유발
		※ 긍정적 영향은 거의 언급되지 않음

^{*} PM은 미세먼지를 일컫는 Particulate Matter의 약자



(참고 4) 봄철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멀티콘센트 안전관리
 - 문어발식 사용 금지
 - 멀티콘센트에 먼지 쌓이지 않도록 관리
 - 전선의 피복이 벗겨졌거나 파손된 멀티콘센트 사용 금지
- 흡연 장소의 철저한 관리(주변 가연물 보관 금지)
- O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취침행위 금지(취사 및 취침 도구 반입 금지)
- 의 위험물 안전관리
 - 건물 내 페인트, 신나, 유류 등 위험물 보관 금지
 - 필요시 옥외 별도 보관장소 설치 및 관리

□ 교육시설 내 화재발생 주요사례

- 전기적요인(40%): 전열기기의 과전류 및 과부하, 전선의 접촉불량 등
- O 부주의(28.3%): 담배 불씨, 용접, 절단 등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안전 상식]

- ※ 첫번째 행동요령: 사고를 목격하면 먼저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화기: 안전핀은 바닦에 두고 뽑습니다.(손잡이 꽉 움켜지면 빠지지 않습니다.)
 - 소화전: 2인 1조로 짝을 이루고 한 사람이 호스 노즐(앞부분)을 잡고, 다른 사람은 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 심폐소생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의식이 돌아 오거나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시행합니다.
 - ※ 심장 제세동기는 캡스(053-850-5005)에 연락하면 가져다 줍니다.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안전 상식





안전핀을 뽑는다 Pull pin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Aim at base of fire



손잡이를 움켜쥔다 Squeeze handle



분말을 골고루 쏜다 Sweep side to side





문을 연다 Open the door



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는다 Take out the hose



밸브를 돌린다 Open the valve



불을 향해 쏜다 Extinguish a fire





의식 및 호흡확인 Determine unresponsiveness



119 신고 및 AED 요청 Call 119



가슴 압박 30회 30 chest compressions



인공호흡 2회 2 rescue breathings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환자의 반응 확인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mark>여보세요, 괜찮으세요?</mark>"를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119 신고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큰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 합니다.

호흡 확인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mark>호흡이 있는지를 확인</mark>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가슴압박 30회 시행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30회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깊이는 약 5cm (소아는 4-5cm), 압박속도는 분당 100~120회를 유지 합니다.

기도개방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mark>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mark> <mark>올려서</mark>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 후 환자 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습니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리는 경 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합니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 서 시행합니다.

회복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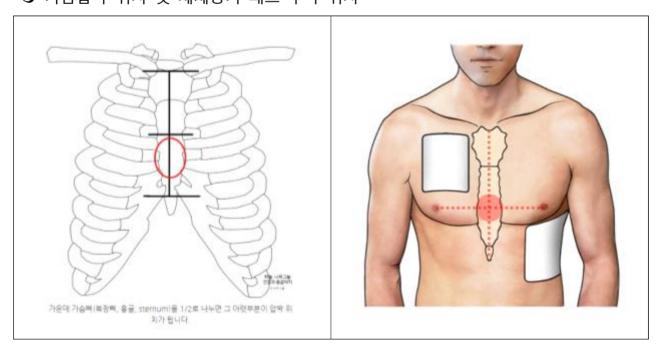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mark>기도가 막히는 것을</mark> 예방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심폐소생협회

○ 가슴압박 + 제세동기 사용



○ 가슴압박 위치 및 제세동기 패드 부착 위치



국민행동요령

소방청

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심장충격기 켜기



자동심장충격기를 켭니다.

* 자동심장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합니다.

두 개의 패드 부착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에, 두 개의 패드 중 한 패드를 오른쪽 쇄골 아래에 부착하고, 다른 패드는 <mark>왼쪽 젖꼭지</mark> 아래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합니다.

심장리듬 분석



자동심장충격기가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동안에는 <mark>환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mark>.

심장충격 실시



- 1. 심장충격이 필요하면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충격기가 스스로 충전합니다.
- 충전 완료 후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모든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 후에 심장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심장충격을 시행한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십시오" 라는 지시가 나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참고 8) 화재 대응 요령

 $\frac{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M5116.html?menuSeq=127$

- 소화기 사용법(영상): http://cdn.kfsi.or.kr/kfsa/WebService/sobangEdu/014.mp4
- 옥내소화전 사용법(영상): http://cdn.kfsi.or.kr/kfsa/WebService/sobangEdu/025.mp4

화재대처

■ 화재 경보가 울릴 때



1 비상소집을 합니다.

 자고 있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②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해 IT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4 119로 신고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⑤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화재 시 행동요령

화재 전파



-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작동
- 주변에 **화재발생 사실**을 **전파**

화재 신고



■ 119 화재신고

현재 위치 :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000건물

초기소화











100









피 난



■ 가까운 비상구를 통해 계단으로 피난

집 결



■**피난 완료 후** 건물 옆 **안전한 장소로 집결**

금지행위



- 화재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계단 이용)
- 피난 후 **건물로 재진입 금지**

비	상
연	락

	경비상황실	캡스	053-850-5005
	소방안전관리자	안전보건팀장	053-850-5302, 5304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총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총에서 내립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mark>머리를 보호</mark>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처량 이용 금지)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을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







탁자 아레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나갑니다.

집밖에 있을 경우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모든 총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총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합니다.

※ 지진 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됩니다.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이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백화점, 마트에 있을 경우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가둥 근처로 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극장, 경기장 등에 있을 경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mark>몸을 보호</mark>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손잡이나 기등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철이 멈추면 <mark>안내에 따라</mark> 행동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 두고 대피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http://www.mois.go.ki









1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2 수행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나타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기개 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경치의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 대한 참여 등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안전관리자] 제18조[안전관관리터	2 수행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수행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나타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16조[관리감독자]	2 수행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나타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당자] 5 제24조[산업안전보건관리당자] 5 제24조[산업안전보건관리당자] 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7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7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8 제3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8 제32조[안전보건관리구정의 작성] 9 제34조[합령 요지 등의 게시 등] 10 제34조[합령 요지 등의 게시 등] 11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12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13 제39조[보건조치] 13 제39조[보건조치] 14 제42조[관리조치] 15 제39조[보건조치] 15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나타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해당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행규칙 [별표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참조 · 정기 : 사무직 (매반기 16시간 이상) · 채용 시 : 8시간 이상 · 장기 : 사무직 (매반기 16시간 이상) · 채용 시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39까작업) :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정기 : 연간 16시간 이상 · 상기 과정별 일용 및 계약기간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교육시간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보 상기의 채용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 특별교육 시간과 동일함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적임자, 안전된지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 여위 작무교육]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적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 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적임자, 안전보건관리다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함 · 이 별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다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함 · 안전보건관리적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사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표지의 설치, 부칙]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사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함 ·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기계·기구, 기타 설비,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및 전가 열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별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출착·봉과·떨어지거나 날이을 위험 등의 장소 및 전제되면으로 인한 위험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인제 위험 · 신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원제로·가스·증기·분진·홍·미스트·산소결집·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업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나타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정기: 사무직(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매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이상 · 특별교육(39개작업):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정기: 연간 16시간 이상 - * 상기 과정별 일용 및 계약기간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교육시간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사업 배한 교육시간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가정별 교육시간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으로 상기의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시간과 동일함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적임자, 안전관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라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총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함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구점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함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하여야함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하여야함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하여야함 -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장소, 사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함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사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함 - 위험 및 자연·발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별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별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출착·봉과·떨어지거나 날이을 위험 등의 장소 및 전제지면으로 인한 위험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전체교교기신·증가 본진·용 미스트·산소업급·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은·저은·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 사업장 바를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계측감시, 정밀·공작, 단순반복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등 단순반복작업 또 안설에 의한 건강장해 등 - 유해되고기신·증가 본진·용 교환 조치를 하여야함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명 자료 관계 함께 함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명 자료 관계 함께 가장·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나타낸
7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 2시간 이상 ・특별교육(39개작업) :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 : 연간 16시간 이상 *상기 과정별 일용 및 계약기간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교육시간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상기의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시간과 동일함 8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각무교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라다, 안전보건라다 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9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10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함 11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칙] ·유해하거나 위험와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의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12 제38조[안전조치] ·위험으로 안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3 제38조[안전조치] ·위험으로 안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4 ·기계·기구, 기타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회성 물질 및 전기·열·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 결착 채석·하역 발목·운송·조작·운바·해채·중함불위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결착 채석·하역 발목·운송·조작·운바·해채·중함불위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결착 채석·하역 발목·문송·조작·운바·성질급 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은·저은·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 상해를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계측감시, 정밀공작, 단순반복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등 안찬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14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명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나타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직무교육] 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9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10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나타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11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표지의 설치, 부착] · 유적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12 제38조[안전조치] ·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기타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및 전기·열·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 별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앙물취급 및 불란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국착·채석·하역 별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앙물취급 및 불란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국학·봉고·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의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13 제39조[보건조치]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종·미스트·산소결핍·병원채·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 - 사업장 배출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계측감시, 정밀·공작, 단순반복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등 14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나타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11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12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13 제38조[안전조치] 14 제39조[보건조치] 15 제38조[안전조치] 16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17 보고	관리감독자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나타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 제38조[안전조치] - 기계·기구, 기타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및 전기·열·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 별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광물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추락·봉과·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의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종·미스트·산소결핍·병원채·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 - 사업장 배출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계측감시, 정밀·공작, 단순반복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13 제39조[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은·저온·초음·고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 - 사업장 배출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계측감시, 정밀공작, 단순반복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14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실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정해
	설비 등 전부를 미제출 등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가동불가	장관에게 제출 적합통보 전 가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제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6 제54조[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이 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	3 <mark>천만원 이하</mark> 의 과태료
17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발생시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그 발생원인 등 기록·보존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히 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	은폐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현 1개월 이내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8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사설의 실 보건조치] 보건조치를 해야함 (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지시 제외)	설치 등 필요한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9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다 보고	호조치를 하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84조[안전인증] · 유해·위험기계들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대상기계 등을 제조·수압하는자는 안전인증을 받 지87조[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제조 등 하의 금지 등]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은 사용하여서 아니 됨	아야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1 제93조[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용 로봇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
22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야 하며, 취급 미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소당) 미교육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대상자 1명당)
23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4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디아니시딘 및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및 가공, 크롬산 아연, ο-톨리딘 및 그 염, 황화니켈류 등	휘발물, 크롬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5 제119조[석면조사] · 건축물·설비의 철거·해체시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의 기록·보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제122조[석면해체, 제거]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 건축물-설비에 함유랑과 면적 이상 석면함유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 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시행규칙 [별표21]의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대상 실시(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유기회합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 소음(80dB이상) 및 고열의 물리적 유해인자, 분진의 유해인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8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 대상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1년 1회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9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0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보존기한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함 - 3년 보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안전조치에 관한 서류, 안전 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기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회의록(2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결과(5년/30년)	